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4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상정된 안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 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 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 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 5

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5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5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7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8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8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8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8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8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8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8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8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14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14

(14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4개 주제에 대해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

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의 수습 및 복구 조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행위로 입은 생명·재산 등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취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단·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에 포함하는—민형배 의원안입니다—것은 기존 민방위사태가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해지원 대상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로 규정한 모경종 의원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또는 합참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은 국가 차원의 통합방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군사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만 오물풍선 살포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색지대 도발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행정입법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되 기존 피해가 최초로 발생한 2024년 5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함께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유사하지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모경종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문 표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정부 측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10쪽에 마련하였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일단 조 제목을 ‘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민방위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을 평시에 발생한 피해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의 제2항의 행정입법 관련 사항에서 금액 부분은 정부가 정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기준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서 금액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 북한의 도발·침투로 인한 피해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동법상 사회재난에 이를 포함시켜서 동법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사항은 사회재난에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첫 번째, 유동수 의원안의 경우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이미 민방위사태의 피해수습 및 복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침투·도발·위협의 정의가 적의 침해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 반해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북한의 도발·위협 피해 시 특별복구비 지급 특례 마련 관련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역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할지 여부는 안보와 재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요.

둘째, 만약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지원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특별복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재난 상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민방위사태 중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피해지원은 평시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이고요. 또 위임사항 중 금액은 다양한 피해 유형·상황에 일률적인 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14시13분)

○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차장 이영팔**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청 소관 법률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소아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재난현장에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구급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구급활동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총 3개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연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119구급상황센터 업무에 소아환자 안내 등 추가 관련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둘째 문단입니다.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구급상황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18세 이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소아환자에 대한 안내의 내용에 약국 안내, 의원 안내, 병원 안내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파악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의 적절성 자체평가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이송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안은 응급처치의 적절성 자체평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조은희 의원안은 현행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응급환자 관련 정보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요청 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은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조은희 의원안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나열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종류에 따라 각 호로, 제1호는 조은희 의원안의 정보가 되겠고요. 제2호 정보는 현행에 있는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증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호로 정리해서 말씀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 사항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환자 정보 요청 근거 신설 관련입니다. 세 개정안의 공통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각 개정안 내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소방청은 이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소방청의 응급처치 적절성 자체평가의 효과성 제고 및 그 밖의 환자 이송정보 파악 등을 위해 이 통신망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고 구급대원 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가 소방청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각 개정안이 각각 다른 조문에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수정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9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요청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통일하였고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용 내용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제22조의2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 제목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10조의2제2항 이 내용은 119구급센터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119구급센터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14시21분)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경찰청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음주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 관련해서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단 다섯 가지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가부터 다까지는 음주측정 방해행위, 술타기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라번은 그 밖의 사항으로 별도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먼저 술타기 방지와 관련된 음주측정 방해행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의 표현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술뿐만 아니라 약물까지 금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취지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행위의 규정과 유사하도록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음주측정의 방식으로 호흡조사와 혈액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 위 내용을 통합 조정한 단일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7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경찰청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술타기 수법 등과 같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3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별 법정형을 보면 현행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하는 안이 있고요. 이것은 징역 1년에서 5년 그다음에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현행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같은 처벌규정입니다. 또는 이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대별됩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불법성 정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법정형을 거부행위와 같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없으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시 각종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고,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내용입니다.

또한 자전거 등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의견은 15·1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음주측정 거부를 금지

하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동일하므로 이를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35쪽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필요적 면허 취소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대상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이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단일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운전면허 결격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현재 음주측정 거부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6쪽 이하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경찰청 의견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음주측정 거부와 입법 취지가 동일하므로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는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재범 방지 및 교통질서 확립, 공공안전 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42쪽입니다.

일단 음주측정 방해행위 관련 규정은 여기서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그 밖의 관련사항입니다. 이건 몇 건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령 4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의 문구를 법률로 옮리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회피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둘째, 약물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인데요.

약물운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에 의한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약물운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채혈이나 채뇨 등이 필요하므로 영장주의를 우회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참고로 현재 약물운전과 관련하여 약물운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돼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7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 결격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과잉금지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약물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법 시행령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약물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물운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채혈, 채뇨와 같은 신체적 검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헌법상 영장주의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기본권 보호와 교통안전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 결격 사항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운전면허 발급 제한은 재범 방지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유효한 수단일 수 있으나 그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형별 강화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영구적 면허 결격처분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 약물운전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때 그때 같이 병합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모경종 위원 이해식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49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을 보시면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필요적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인 자신의 도피행위는 방어권의 일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잉금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사항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운전자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도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타인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음주측정 방해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개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 방지와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80조의2제1항과 93조와 관련해서는 시행일 이후에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자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필요적 면허취소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관련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먼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필요적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입니다. 49쪽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방어권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도주가 단순한 불안이나 공포로 인한 행동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음주측정 방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음주측정 방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동승자의 행위가 공동정범, 교사, 방조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5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관련입니다.

경찰청 의견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인 만큼 국민들이 새로운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을 준비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3번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 결격과 관련돼서 3회 이상 상습적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없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음주측정을……

○**이상식 위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 이것 말이지요?

○**이광희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4번 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5번 안의 음주측정 방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 역시 개인의 어떤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하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나 개인의 방어권 자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제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정부 측 의견이 어떠세요?

○**이해식 위원** 정부 측 의견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저희는 신중 검토……

○**소위원장 조은희** 예, 그러면 반영이 된 거니까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은희** 예.

○**채현일 위원** 아까 지나간 14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도 되는데 음주측정 방해행위하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거고 방해행위는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행위 태양이 다른데 보호 법익과 입법 취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법정형을 같이한다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안이나 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거든요.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조문상** 일단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와 측정 거부행위가 비슷한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개정안의 내용들이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는 게 거의 절반이고요. 그것보다 낮게 하는 건 없습니다. 높게 하는 게 또한 절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보다 높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법정형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음주측정 거부와 방해행위가 똑같다고 보는 거지요? 같다고 보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문상** 유사하다고 보는 거지요.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법정형을 같이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일단 개정안들 중에서 이것보다 법정형이 낮게 들어와 있는 개정안은 없습니다, 지금.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2건의 법률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리뷰만 하는 차월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14시43분)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선관위에서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9항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선거관리준비경비 편성·배정시기 조정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편성시기를 현행은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로, 배정은 현재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관리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준비경비를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본예산이 아닌 선거실시 전년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277조 1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일부 대통령선거 준비사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비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예산에 편성·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 의견을 21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 또 역시 한명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헌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3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공공기관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즉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입니다. 금지의 대상에서도 삭제하였던바 유사한 취지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 의견을 23년 1월 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상에서도 제외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오늘 리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이 남은 시기나 또 두 번째 안건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단순 위헌으로 법안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이 지나서 지금 처리가 시급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1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건의 법률안은 간사 간 논의를 거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처음으로 열린 우리 소위원회 회의에 모두 열심히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계신 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김종양 모경종 용혜인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동만 조은희 채현일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경찰청

차장 이호영

소방청

차장 이영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